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관련 간담회

1. 사전회의 결과

☐ 개요

- 일시 : 2007. 3. 29.(목) 17:30~20:00
- 장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실
- 참석
 - 장추련 : 김동범 집행위원장, 김광이 법제위원 외 5인
 - 인권위 : 정영선 인권연구팀장, 김화숙

☐ 간담회 개최 배경 설명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구성된 정부합동준비단에서 인권위에 시행령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 바, 이를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 장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설명

☐ 주요 논의 결과

- ㉠ 4월 18일까지 정부합동준비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므로, 향후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기로 함.
- ㉡ 시행령 위임 분야별로(별첨 자료 참고) 가이드라인 내용(초안)을 작성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하기로 함.
- 분야별 전문가는 장추련에서 구성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4월 6일(금) 19시에 개최하기로 함.

2. 제1차 회의

☐ 개요

- 일시 : 2007. 4. 6.(금) 19: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회의실

☐ 논의 내용

- 큰 틀의 차원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가이드라인 내용(초안)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전체적인 논의
- 초안 수정 사항 결정
- 향후 계획 및 일정 정리

[붙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행령 위임 내용

분야	시행령 위임 사항
총칙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제3조 제3호)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밖의 교육기관의 범위(제3조 제6호)
고용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제11조)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
교육	편의제공의 내용, 정당한 편의 제공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14조)
시설물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제18조)
이동·교통수단	보행 및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운전면허시험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등(제19조)
정보통신·의사소통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을 위한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1조)
문화·예술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 대상의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제24조)
	체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25조)
사법·행정절차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동등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서식의 제작 및 제공, 조력자의 신청 등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26조)
장애여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밖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제33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43조)